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34호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무상교통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협력체계 구축, 지원신청,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라. 무상교통 지원중단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u>2023년 11월 22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6,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mhwa@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4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의의원 : 성보빈·강창석·김경수·김영록·김혜란

박강우·서영권·이정희·황점복 의원(9명)

찬성의원 : 김수혜·김우진·이천수 의원(3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보장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교통비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체계 구축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지원중단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르신"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 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 2. "청소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3.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4. "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 시내버스는 시와 환승 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
 - 5. "교통카드"란 어르신 및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해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정의된 어르신 및 청소년으로 한다.
 - ② 교통비 지원은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월 4만5천원으로 한다.
 - ③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 및 청소년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따로 정한다.
-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및 청소년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
- 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지원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 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 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 운영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생략)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7. 국제교류 및 협력(생략)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초긴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 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6. 오지 · 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 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 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 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내용생략)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내용생략)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내용생략)
-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내용생략)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내용생략)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내용생략)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내용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 구 분 | 자 동 차 의 종 류 |
|---------------|----------------------------------|
|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고급고속버스: 제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라. 시외우등직행버스: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마. 시외직행버스: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바. 시외고급직행버스: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사. 시외우등일반버스: 제8조제7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아.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7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3. 택시운송사업 승용자동차 또는 각 목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다만, 승합자 동차의 경우에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 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
| 4. 마을버스운송사업 |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
| 5. 전세버스운송사업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 업 |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
| 7. 수요응답형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

비고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이 11인승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